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안내사항

- 학생 건강증진은 어느 한 분야를 집중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신체·정신건강 관리,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식생활 및 급식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식을 향상 시키고, 관련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2024년 학생건강 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안내하니,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시도별 학생건강 증진 계획 수립시 동 정책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람

학생 건강증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건강관리

- 1. 보건교육 내실화
-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6.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환경관리

-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3.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 강화
- 4. 학교시설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급식관리

-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 2.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4. 학교급식 영양관리강화
-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 6. 학교급식 지도·감독및 행정지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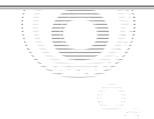
I . 건강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3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8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12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16
6.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19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22
Ⅱ. 환경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7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33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42
Ⅲ. 급식관리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58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64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66
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69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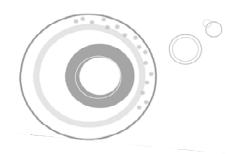
${ m IV}$.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75
2.	보고 목록	77
3.	보고 서식	78
*	차고자료1	05



I. 건 강 관 리

- 1. 보건교육 내실화
-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6.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1)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강화

□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안내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10351('23.11.27.), '2024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3.12.15.), '2024년 교육부 초·중등 분야 주요정책 안내'

□ 주요 업무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 1. 에 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rightarrow 교육정책 \rightarrow 교육과정 \rightarrow 교수·학습 \rightarrow 범교과 학습주제
 -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 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학교보건
 -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교육청 개발 자료
 -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 1시간 기준 : 초(40분), 중(45분), 고(50분)
 - ※ (중·고등학교) 학생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도 증가를 고려하여 선택과목(보건)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워대책 마련 및 이행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강화
 - * 「초중등교육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지도 등에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장학은 단위학교의 교육 과정, 수업, 교원의 전문성, 학교 조직 운영, 교육정책 수행 정도 등을 지도·평가하는 활동으로, 전국 학교의 교육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국가위임사무임
 -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수립·추진,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 교사(필요시 보건 보조인력)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보건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적극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재산권 유의)
 -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학생건강 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현 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 중인 학생 건강검진의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단 발족('23.5월)
 - 학생 건강검진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위탁 추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통합 추진
- 인스턴트 섭취율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
 - ※ 연도별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 ('17) 23.9% →('18) 25.0% →('19) 25.8% →('21) 30.8% →('22) 30.5%

□ 주요 업무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 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학교)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나.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철저

- (학교·교육청) 표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 (교육청) 표본학교로 신규 선정된 학교 대상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학교의 장 → 시도교육감: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10월 31일까지

다.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라.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적극 협조

-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 예정(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 (교육청) 학생 건강검진 위탁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예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협력 협조 요청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24년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제도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자료 제출, 예산 등) 필요

마.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 (학교·교육청)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요청
- (교육청)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관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현황

- 「학교보건법」제14조의3('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20)」수립·추진
 -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대책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 마련·추진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6.12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 인위생수칙, 환기 포함 학교시설 관리수칙 등
- 학생대상 예방교육 및 학부모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17.3월)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 (유. 초·중·고 구분)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국어 번역본 포함)
- ㅇ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수 형태(원격, 대면) 결정
-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 마련·안내 실시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20.3월 1판 마련 이후 23.8월 기준 10-1판 개정)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 ㅇ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학교 감염병 예방 2차 종합대책('24~'28)」수립·추진('23.12월~)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제작·배포(*23.12월) ※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추가 개발

□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 ※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등을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는 효율성을 고려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실시 예정
- ㅇ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 1. 1.)
 -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 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입소 전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기숙사 입소 예정 학생에 대한 결핵 검진은 무료이나, 일부 보건소는 사 정에 따라 유료로 실시될 수 있으니, 사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 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star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sim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sim 익년도 4월

라.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별 세부 대책 추진 철저

-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경험 등을 고려 수립('23.12월)
 -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이후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등 포함 추진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 차단 대책 수립
- ㅇ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지원
 -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학교관리자 대상 컨설팅 등 관련 사항 지원
- 관내 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용품 구비 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 점검·예산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별도 연수 및 컨설팅 등 적극 지원

마약류 및 흡연 · 음주 포함 약물 오 · 남용 예방

□ 기본방침

○ 마약・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현 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정
 - ◈ '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 ▲ 현재 음주율 : '22년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21년 대비 증가(남 2.6%p↑, 여 2.0%p↑)
 - ▲ 현재 흡연율 : 일반담배는 '22년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21년과 유사, 전자담배는 액상형 남 3.7%→4.5%, 여 1.9%→2.2%, 궐련형 남 1.8%→3.2%, 여 0.8%→1.3%로 증가
-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재, 국제우편 · 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
 ※ ('17년) 119명 → ('23.10월) 481명 / 304% 증가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23.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확대
 - ※ (이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합산 연 10시간 실시 → (개정) 전체 10시간 중 학교의 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최소 시간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과정 개설·운영('23.5월~)
-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관련 학교·가정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학교에서 실시중인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조사 실시('23.9월)
 - ◈ (조사 대상) 전국 초·중·고 510교 11,541명(교원 533명 / 학생 11,008명)
 - ▲ (조사 결과) ① 교원 : 학교의 급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 필요, 담당 교원 대상 정례 교육과정 운영 필요,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은 연 2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 ② 학생 : 최근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에게 매우 위협,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호기심 때문, 체험형 교육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다수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23.12.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 주요 업무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강화

- (학교·교육청) 모든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고려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 <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 ('23.10.16)>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 실시시간: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 매 교육시마다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교육청)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

나. 교육자료 개발·배포

- (교육청)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하여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도 제고
- (교육청)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교급별 예방교육 자료 활용*(연중) 및 가상 현실 및 메타버스를 이용한 마약류 예방교육관 운영(별도 안내 예정)을 각급 학교에 적극 안내
 - * 교육자료가 필요한 교원은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 가능

다. 담당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원격)^{*}'연수 과정을 교육 담당 교원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실적 관리
 - *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연수원에 개설('23.5월~)
-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은 자격·직무연수 등에 마약류 예방교육 1개 과목 이상 개설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 별도 운영하되, 체험형 예방 교육, 교과연계형 예방교육, 토론형 수업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 (교육청) 교사의 학생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을 적극 지원
- (교육부)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법무부 지원 법교육,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 지원
 ※ 지원 횟수 : ('22) 1,000회 → ('23) 5,300회 → ('24) 추후 안내 예정

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 (교육청)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학교 지원(보건소 등)
- (학교·교육청) 마약류와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시고 스시	검찰	1301	
신고, 수사	경 찰	112	
청소년 재활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2-6929-3192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마약중독치료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마.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 (교육청·교육부)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 (교육부)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계속)

바. 학교 금연구역 지정·운영

- (학교)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교육청은 관내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금연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 (기타) 현재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의 금연구역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확대 적용 예정('24.8.17)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4.8.17. 시	l행)으로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다	1
-----------------------------------	--------------------	---

구분	현재(`24.8.16.까지)	향후(`24.8.17.부터)	
지정 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 범위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절대 금연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제1형 당뇨병^{*}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2형 당뇨병은 주로 40대 이후 중년기 연령대에서 호발

□ 현 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학교보건법」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내 학생 "안전교육 담당부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시행
 -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에 따라 시행
-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 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주요 업무

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 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 * 「응급의료법」,「119법」,「어린이안전법」등
 -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 검토 후 추진 필요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자의 범위>

- 1. 모든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나.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교육청) 학교별 제1형 당뇨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참고사항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 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6)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 기본방침

- 학생들의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지원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제11조는 학교의 장에게 정신건강 관련 교육, 위기 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검사·치료비 지원의 근거 제시
 -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주요 업무

가.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 · 행동문제 조기발견

- (검사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성인학생 등의 검사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자 조정 가능
 - ※ 학교 내·외 시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대책 마련·추진
- (검사절차)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 중등 AMPQ-Ⅲ)를 사용하고, 그 밖의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실시 지양
 -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시 관심군 대상 표준화도구 적용은 가능
- (검사방법) 온라인 검사(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실시 가능)

(검사시기)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 사항]

- ▶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이 학년승급, 전·출입, 진학 등으로 인해 등으로 인한 학생관리 (전문기관 2차 조치 포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재검사, 관련자료 확인 및 학생 관리 철저
- ▶ 학생 검사결과 통보 시, 검사 결과지 및 관리(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재학 중 학생관리 자료로 활용. 용도 소멸 즉시 폐기(파쇄)
- ▶ 온라인 검사시스템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관심군↔정상)적용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중 처리, 담당자 주관적 견해에 따른 변경 금지
 - ※ (민원) 학교 내 담당자가 관심군 학생의 학부모에게 재검사 권유
- ▶ '학교폭력 피해사례(별도문항)'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하도록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인계

나.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정보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 (학부모) 상담・치유지원 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대·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후관리 철저)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철저
 - 병원에 연계되어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 지속 지원 및 관리 철저

< 위험수준별 학생 관리방안 >				
	•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총괄자(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 운영 등			
관심군	• (지속관리) 학교 내 상담 정례화(최소 분기별 1회 이상)			
	• (전문기관 연계)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2차 조치 등			
우선	• (학교내 집중관리)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구선 관리	•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			
	병의원 의뢰체계 구축·운영, 병원 연계되어 치료 중인 학생 관리 지속			

- 학교 내·외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 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운영 등으로 단위학교 내 지속적인 학생관리 체계 마련
 - 위험 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 워크 구축(전문 인력·가용자원 정보구축·활용 등)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 마음 건강 자문의사 위촉·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를 고려,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다. '마음EASY 검사'를 통한 마음건강 수시 및 조기 발견

- (개요) 3년에 한 번 받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상시검사인 '마음EASY 검사'('24.3월)를 활용한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적기개입
 - ※ 검사지 사용, 검사매뉴얼 등 활용요령은 별도안내
- (검사실시) 정서·행동특성검사 해당학년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생 대상 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나 온라인 또는 서면 검사
 - ※ 초등은 학부모가, 중등은 학생이 직접 검사지 작성(검사 링크를 교사를 통해 제공)
- (결과활용) 학생·학부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인별 해석자료(정서, 불안, 대인관계, 심리외상 등) 제공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 기본방침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교육감이 설치한 '학생 건강증진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 건강증진 지원 강화

□ 현 황

- 학생 건강증진 지원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21.9월)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 학생 신체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23.10월)
- '학생건강증진센터'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편성·지원('22년~)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4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ㆍ지원 추진 예정('24.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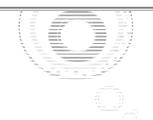
□ 주요 업무

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별 연차별 추진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학교 내·외 건강 이슈와 사전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렴 등을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청 공무원,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 다양한 건강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분야별 전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각 시도교육청별
 분담금으로 운영 예정으로, 예산 수립 및 지원에 적극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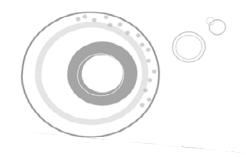
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 운영 적극 추진

- 전문적인 학생건강증진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 시도교육청별 '학생 건강증진센터'설치 적극 추진
 -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탁 또는 혼합 형태로 추진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교부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교부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 별도의 계획·평가 없이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거나, 특정 시설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지양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안내 예정
 - 현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기관 설치를 계획중인 시도교육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예정



Ⅱ. 환 경 관 리

-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기본방침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부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운영 중인 학교 주변 각종 유해요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현 황

-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수립·시행('22.11.10.)
 - 3개 영역(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8개 세부 실천과제 포함
 - 시·도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제2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 포함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례화
 -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및 적발업소에 대한 신속한 이전 · 폐쇄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규제 완화 및 합리화
 -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제외하고,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22.3.25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22.3.25 시행)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22.3.25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만을 인정토록 명확히 규정('22.3.25 시행)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검토절차 개선('22.6.29 시행)
-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외 해당 구역 학교의 장의 의견을 함께 제공
- 교육환경보호제도 업무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한 제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 등 상시 제공('23.9.4 개통)
 - 교육환경평가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질의·회신 사례 통합 제공, 기 제공된 사례로 해결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신규 정보 공유 등
 - ※ 교육환경업무공유시스템 접속(https://epss.schoolkeepa.or.kr/qna) 및 회원가입(교육부 행정 전자서명인증) 후 이용

□ 주요 업무

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2024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수립('23.12.31.)
 - 2024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2023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는 '24.3.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제출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ㅇ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기능 강화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운영 분담금 확보 적극 협조)
 - 학교 인근 대규모 정비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따른 학습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원^{*} 강화
 - * 시·도교육청별 주요 취약구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현장진단(교육환경 평가서 효과파악) 및 컨설팅 실시(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업장 대상 각종 유해물질 발생 수준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세부 사업계획 별도 안내 예정)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및 승인 시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로 민원이 빈발 하고 있는 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
 - ※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한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 및 관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기간 준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요청 →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회신)
 - ※ 평가서 작성 부실 등의 사유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 불승인시 명확한 사유를 명시 하여 통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검토 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약을 하도록 하는 관행 금지 → 학교의 요청사항(학교의 장의 의견)은 시·도 교육환경보호의원회에서 제공하여 심의를 통해 확정 및 권고토록 제도 개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시행('22.6.29)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국토부 협조요청 사항 이행 안내('23.9.27.)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는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회신
 - 권고사항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최종 주택건설 사업계획 확정 전 교육감에게 추가 제출 예정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심의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해당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전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자치 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ㅇ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 바, 법정 기한 준수 철저

- 단, 「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철저
 -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건수 :'20(46건) → '21(354건) → '22(391건) → '23(507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을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으로 대체(학교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 교체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철저
 - 각급 학교(대학 포함)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 및 오류정보 확인 시 즉시 조치
 - ※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필요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철저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설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ㅇ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학교 주변 토지이용 정보제공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민원인이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적극적 제도 홍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시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심의현황 모니터링 후 해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심의결과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 해제율 : '19(50.2%) \rightarrow '20(60.4%) \rightarrow '21(58.2%) \rightarrow '22(59.2%) \rightarrow '23.6(54.8%)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시 현장 확인 및 철저 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참관조치, 민원인의 기피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적극 준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신·변종업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자치단체 등과 공유
 -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3월, 9월 예정)시 적극 협조
 - 보호구역 실태점검 시 위반업태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확인 시 고발조치
 - 학교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불법 영업시설 포함)의 위치를 표기한 보호구역관리도 비치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 요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자료 송부 후 공개 요청)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라. 교육환경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리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 제고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학 생	19.9	21.5	30.5	46.9	68.3
학부모	36.1	40.4	53.5	69.6	79.4
교원	85.5	87.9	96.2	94.7	96.1

마.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이러닝 입문 과정인'교육환경보호제도 이해'(12차시) 연수과정 운영(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21년~)
- 교육환경보호업무 신규 담당공무원을 위한 단기 직무과정(1일 8시간, '24.3월 및 8월, 신규자) 및 직무연수 심화과정(18시간, 6월) 운영

바.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안전대책 강화방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취급 하는 사업장에 정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현황 파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2.3.25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제도가 '상위 규정수량' 관리제도로 개정된 사항 반영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 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 제도 홍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반영, '19.4.2.)
 - ※ 화학물질 취급시업장 인근 학교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 참고(학생건강정책과+8339, '18.11.2)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기본방침

○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현 황

○ 학교석면건축물 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 등을 통해 연평균 약 12.8%씩 감소 하고 있으나, '22년 12월 기준 6,237개의 학교석면건축물 존재

년도	전체학교수	무석면 학교수	석면건축자재 학교수
2018	20,981	10,216	10,765
2019	20,697	11,114	9,583
2020	20,731	12,108	8,623
2021	20,718	13,284	7,434
2022	20,612	14,375	6,237

○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 이후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점검, 연차별 관리계획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등을 추진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업무 연혁]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른 석면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12.4.)
- ▶ 석면지도 오류사항 확인 및 보완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 「학교석면관리매뉴얼」3차례* 개정·배포('16.3~'19.1)
 - * (1차)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확인 및 조치 \rightarrow (2차) 석면해체·제거시 사전석면의심 개소 확인 및 조치 \rightarrow (3차) 석면 지도 오류정보 확인 및 후속조치
- ▶ 석면조사 결과 다중 검증 및 석면지도 재검증, 학교석면관리매뉴얼 준수 철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석면관리 강화방안' 수립·시달('19.3.22.)
- ▶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적정 지적 및 관리·감독 철저*(감사원, '20.3.)
 - * 석면 위해성 평가를 누락·부실하게 실시한 학교에 대하여 수정·보완 조치,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방법 개선*('20년), 나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상·하반기 각급학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정보를 추출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로 제출(학생건강정책과-9207,'22,11,14,)**
 -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개정고시('20.7.14.)
 -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제출 의무화(석면안전관리법 개정, '22.12.10.)
-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위탁기관 추가 지정('22.5.)
- 학교석면건축물의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위해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주요 업무

- 가.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의무교육(법정·보수) 이수
 -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및 제24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 33조 및 제35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2조, 33조
 - (지정·신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학교의 장은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후교육감(장)에게 제출
 - (신고시기) 지정신고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변경신고는 인사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장)에게 신고
 - (교육)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신규자 교육) 이수
 -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교육부 고시 제2022-11호, 2022.5.2.)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규자 교육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 법정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미지정(미신고 또는 변경 미신고 포함), 법정교육 미이수자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방법으로 가능한 바, 법정교육 이수상태 확인 철저
 - ※ 일부 신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보수교육인 원격교육을 이수하고,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등록하는 사례 확인

o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의 안전성·신뢰도 제고

- 학교에서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19.1.28, 5차 개정) 준수하여 관리
- 학교 석면 조사결과(석면지도, 위해성평가 등)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오류사항 확인 시 보완조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평가*) 실시 및 후속 조치 철저**

- * 석면지도에 표시된 석면함유 자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실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 차수 생성)에 그 결과를 기재(동일물질별 대표 적인 위해성평가 결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개별 실별로 작성 후 기재)
- **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개·보수(완전 해체·제거가 어려울 경우 파손부위 또는 파손 우려 부위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 실시) 등 우선 조치
- ※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에 등재하기 전 학교운영 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석면 관련 정보제공(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및 감시·감독 철저
- 석면 해체·제거·손상 발생 등으로 석면함유 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이스에 필수 반영(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유형 및 면적확인)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석면안전교육 실시
 -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등급 공개

나. 교육(지원)청의 학교석면관리 실태 지도·점검 강화

- 학교 석면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 위해성 평가 검토(점검)단 등을 구성하여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표본 확인·검증 시행
 - 학교내 관리가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지도 또는 컨설팅 지원

 ※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20년 감사원)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협의(설명)회 또는 전문교육 실시하여 석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 ※ 최초 조사 시 무석면 학교, 최초 조사 이후 석면해체·제거를 통해 무석면으로 관리중인 구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치 → 무석면학교 인증 전까지는 석면학교에 준수하여 관리
 - 석면해체·제거 이후 무석면학교 인증 검토시에는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하고, 필요시 전문 조사업체를 동행토록 하는 등 확인조치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현 황

○ '23. 6월 기준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1.0%인 137교 수준

<급수시설별 각급 학교 현황('23. 6)>

구	분	초등	학교	중호	학교	고등	학교	특수	/각종	겨	
 전체	학교수	6,4	17	3,3	325	2,4	l37	2	87	12,4	166
	상수도	6,308	(98.3)	3,276	(98.5)	2,398	(98.3)	282	(98.2)	12,264	(98.3)
급 수 시 설	지하수	79	(1.2)	35	(1.0)	18	(0.7)	5	(1.8)	137	(1.0)
시 설 (%)	상수도+지 하수	22	(0.4)	13	(0.4)	21	(1.0)	_	_	56	(0.4)
	외부공급	8	(0.1)	1	(0.1)	0	()	_	_	9	(0.07)

- ※ 학교 수에 분교장이 포함, 상수도+지하수 공급학교는 지하수사용학교에 포함
- ㅇ 학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매분기 1차 측정결과 초과학교)
 - ※ ('18.2분기) 5.5% → ('19.2분기) 7.9% → ('20.2분기) 10.1% → ('21.2분기) 8.8% → ('22.2분기) 11.8%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가. 먹는 물의 공급원칙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나. 수돗물 관리대책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급수 조치
 -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 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철저(「수도법 시행 규칙」제22조의3, 제22조의5 및 별표 6의2)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 저수조의 청소주기(반기 1회 이상) 및 점검주기(월 1회) 준수 철저, 점검 일지 작성·보관,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 참고사항: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대상에서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대상 포함
- 먹는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ㅇ 수질검사 실시
 - 「수도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철저
 -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하여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 ⇒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 포함

-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급수관의 세척 등 관리 철저
 - ·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 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 실시
 -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 급수관 세척 실시
 -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 기타 관련 사항은 「수도법」 등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도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적극 개선조치 지도

- 상기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안내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신규 지정 시 1년 이내, 이후 매 5년 마다 8시간

다. 지하수 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ㅇ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 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 4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주기	민	항목>
`		_	\circ

 구 분	주기	수질검사 항목				
一 正	T/I	일부 항목(3회/년)	전 항목(1회/년)			
음용수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 망간산칼륨소비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4 참고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 소방용 등은 제외				

- 음용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 (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하는 등의 안전 확보방안 강구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브롬산염 발생 최소 및 제거 대책 마련 후 사용
- '14년 조사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관리 철저 등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토록 하여 안전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라. 정수기 관리대책

- 정수기는 그 간 먹는물 공급시설별 수질검사 결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소모품 교체, 내·외부 청소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검사항목 : 총대장균군, 탁도
 -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저수기능 또는 필터 설치 등)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직전 실시 등을 통해 청소 및 소독 주기 설정
 -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조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하고, 학교 수질관리 실태 상시관리를 위 하여 수질검사 결과 수합시 직전 청소 또는 소독 여부 확인 조치 강구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 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 실시(이 경우 소독에 의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정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현황 기록을 유지
- 냉·온수기의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 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2019년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사업으로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사용 및 관리실태 점검 철저
- 온수제조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정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고려
 - 특히, 저수조 및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 및 온도 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및 램프 작동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마. 학교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물)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 학교 저수조수, 수돗물급수관, 지하수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 입회하에 채수 및 봉인
 - ※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의 필요

- 수질검사기관에서 학교의 수질검사 시 그 결과를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 시 활용
-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 관내 정수기 중 10% 내외 수준의 정수기를 대상으로 교육감(장)이 직접 표 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제출(매분기)
- 관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이 해당 사항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바,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학교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 현 황

- 기존 학교는 학교시설 내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항목과 항목별 측정 시기 등을 구분하여 적용
 -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7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공기질 측정결과 라돈(Rn) 0.18%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09% > 총부유세균 0.01% 순으로 초과한 것으로 조사(2022년 상반기 기준)
- 신·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 VOCs: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교실 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19.4. / '19.7)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무화 등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대지 (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로 확대

- 교실 내 공기질 점검항목 중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및 공기질 점검주기(연 1회 이상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단축
- ㅇ 학교 미세먼지 관리 중요성 강화
 - 전국 모든 학교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20.3월) 및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안내서 제작 및 개정 보급(5차 개정, '21.8월)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19.11~'20.1)
 -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성 향상 및 측정결과의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등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횟수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를 각각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학교보건법」 개정, '22.6.29. 시행)
-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기준농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PM10:67.5 μg/m³~75μg/m³이하 및 PM2.5:31.5μg/m³~35μg/m³ 이하)인 경우에는 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 '22.7.14. 시행)

□ 주요 업무

가.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 ㅇ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 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조치
- 교육감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철저('18년 이후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 운영 중)
-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학교장 대상 특별연수 실시
- 관내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교육감(장)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교육감(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점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각급 학교 관리 강화('21. 정무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시·도교육청이 외부 전문업체에 공기질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 → 외부인 방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운영중인 경우 탄력적 운영하고, 사전 관내학교에 측정방법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점검 당일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 · 도교육청별 관내 학교 중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대상 학교의 규모 및 방법 등은 시 · 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교육감(장)은 공기질 취약(우려)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 먼지측정기기 활용,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공기질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점검 적극 추진
 - ※ 미세먼지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내 컨설팅 및 특별점검 실적은 매주 단위 파악 예정
- ㅇ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공기질 점검 시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학교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 '21.12월)에 따른 측정방법 등 준수 철저
-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장소 등 안내 협조)
-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 조치(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1차 측정 교실 포함, 이 경우 재측정은 가급적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 컨설팅 및 개선효과 파악)
-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시 측정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 관계자 불시 현장점검 또는

학운위 위원(학부모 포함) 참관 등을 통한 통제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별 공기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연수 적극 추진
- 외기 기상상태에 따른 교실 내 미세먼지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관내학교의 일정비율(시·도교육청 실정을 고려하여 설정)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3월)에 보다 정밀한 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교실 내미세먼지 측정 실시 추진
- 공기질 검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정보공시와는 별도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안내)
- 「학교보건법」 개정('22.6.29. 시행)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현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을 통해 현재 연 1회 이상 점검항목인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
 -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 ㅇ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추진
- '19년~'24년 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 추진
- 사업 완료('23.4월) 후 학교를 위한 '중앙 공조·청정 시스템', '온습도 제어 복합 시스템', '공기환경 종합진단 매뉴얼' 등 결과물의 학교 현장 사용에 적극 협조
- ㅇ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학교 시설 내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시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유치원 환경관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질 점검 등 환경위생 관리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제)

나.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강화

- ㅇ 「학교보건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준수 철저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이 확대('19.10)된 바, 공기질 점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라, 교육감(장)이 직접

공기 질 측정을 하는 경우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연 2회*)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정도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검사결과표 기재)

- *「환경분야 시헙·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는 시험장비는 소관 법률에서 정한 주기에 따른 검사 실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추진 ※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사용목적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
- 공기 질 등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추가(기숙사, 급식실, 체육관 및 강당 등)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ㅇ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 철저
 - 체육관, 강당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설치 추진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21.8월)에 설치 및 관리 방법 등 준수 철저
 - ※ 공기정화장치 관리주기(안): 점검 및 청소(1∼2개월), 필터교체(3∼6개월)
 - 임대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관리업체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입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학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필터교체비용지원,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등) 검토
 -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가동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 실시(학교 공기 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별지 서식 활용)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독려 및 관리(사용방법 등 포함)철저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 시에는「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지역부를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 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 책상, 의자 등 학교 비품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6.9월)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 질 측정

- · 측정항목(8개)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 >※ 벤젠(30μg/m³ 이하), 톨루엔(1,000μg/m³ 이하), 에틸벤젠(360μg/m³ 이하), 자일렌(700μg/m³ 이하), 스티렌(300μg/m³ 이하)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저감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시설 사용
- ㅇ 학교시설 안에서의 라돈 및 석면에 대한 점검강화 및 신속한 후속조치
 - 라돈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실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치 강화
 - 라돈 고농도 의심지역 내 학교의 경우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교구성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석면의 경우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또는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위해성평가 결과 고려)이 있는 교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실시
- 냉·난방기기 위생상의 조치 강화
 - 필터 등 정기적인 소모품류 교체 및 기기 청소 등을 통한 위생상 안전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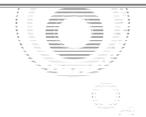
다.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 ㅇ 학교 소유도 측정 및 방유시설 설치요구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 추진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 ※ "군 시설 인근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안내"(20.11.12, 20년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조치)
 -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피해 학교 관리강화를 위하여 학교 부지 경계선이 고속도로와 30미터 이내인 학교의 소음 점검방법* 개선
 - * 소음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의 창문 외부 0.5~1m 지점에서 소음측정(30분 간격으로 5분간 측정 후 산술평균)

- ㅇ 학교설립자의 방음대책
 -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 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 여야 함
- ㅇ 항공기소음 관련 방음대책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라. 기타 환경위생 관리

- 화장실 설치 및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특히,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등)
 -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2019.7월)
- ㅇ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준수 철저
 - 「환경보건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
 -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 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에는 30일 이 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Ⅲ. 급식관리

-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 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 「학교급식법」개정·시('21.1.30., '22.6.29.)으로 동 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에 따라 유치원도 적용 가능
 - ※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급식'은 '유치원급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 위원회' 등으로 봄
 - ※ 각 시도교육청에서 급식정책방향 수립 및 추진 시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중등 급식담당 부서에 안내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위해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 ㅇ 수요자 참여 확대 및 열린 급식 운영으로 급식 만족도 향상

□ 현 황

- 2022학년도('23.2월 기준) 유·초·중등학교 19,713개교(100%)에서 학생 585만명 급식 실시
 - ※ (유치원)「학교급식법」적용 대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원아수 50명 이상) 7,726개원(병설 유치원 4,357개원 포함), 급식인력 8,348명 배치, 전체유치원의 99%에서 직영급식
 - ※ (초중등) 초·중·고·특수 11,987교, 급식인력 74,156명 배치(영양교사 및 영양사 11,158명, 조리사 10,940명, 조리원 52,058명), 전체학교의 98%(11,751교)에서 직영급식
- 2022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점심) 실시
-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21.1.30.시행) 및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배치가능토록('22.6.29.시행) 학교급식법령 개정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현원)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 주요 업무

가. 학교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특히, 초·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추진할 경우는 관할 교육지원청 승인
 -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 적용(법제처, '15.8.21)
-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및 급식만족도 제고
- 초·중등학교는 위탁급식 시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
 -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 철저

나.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위원장(부교육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위촉 협조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기능 수행
- ㅇ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가 주관하는 학교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다. 학교 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 o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학교는 '급식소위원회'의무 설치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 보장 및 운영 활성화 ※ 급식소위원회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 등을 간사로 참여('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 학교 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모니터' 활동 운영
- ㅇ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 급식소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급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
 - ※ 급식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16년~)
 -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보호자 부담 급식 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및 매 학년도 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제출
 -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제5차)의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5번_참고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 또는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을 통해 급식 과정 공유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 ※ 학교급식 대국민 홍보사이트 "학교급식 정보마당" 운영(www.sfic.go.kr)
 - 학생에게 제공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학부모 모바일 앱 등 포함)에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노력
 - ※ 식단표 메뉴명은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마약' 등의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라. 학교급식비 집행관리 철저

- ㅇ 보호자 부담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시·도교육청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전용 제한
- 급식운영비 중 보일러 및 급식기구 등 시설·설비의 유지비는 학교기본 운영비에서 집행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급식관련 기부 요구자, 금품·향응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
-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금지
 - 학교에서 식재료 대금을 카드로 결제(지급)할 경우 수수료가 납품업체에 부과되어, 이는 식재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카드 결제 지양
- ㅇ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관리 철저
 -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하여 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 적극 권장
 - ※ 유통기한(소비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 ※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관리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제18조)
 -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 ※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운영평가 방법 안내 참고(학생건강정책과-2733, '22.3.30.)
 - ㅇ 급식운영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우수교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 실시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기본방침

-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
- ㅇ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 현황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중 급식 원인 추정 발생 건수는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이나, 건당 평균 환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21년부터 유치원 포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잠정)
발생 건수	44	24	13	28	33
발생 환자수(명)	3,136	1,214	401	830	1,341
건당 평균 환자수	71	51	31	30	41

- ※ 주요 원인균: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등
- 식기세척제 성분(수산화나트륨) 안전성 확보 대책 지적(13년 감사원 17년 국정감사)
- 방학 중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여름은 곰팡이, 겨울은 동파 등) 지적(23년 국정감사)

□ 주요 업무

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수립·추진

- 방학 기간을 이용한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기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학기 시작 전 개·보수 완료 조치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 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후 개선
-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 및 지하층에 설치된 조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 HACCP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고온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해 공조장치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추진
 - 조리작업을 줄이고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자동화 급식기구^{*} 등 능률적인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가열 요리는 오븐을 적극 활용 (오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튀김·구이·부침 등 조리 횟수 조정)
 - * (예시) 오븐, 보온·보냉 배식대, 자동 교반기·컵세척기, 행주 삶는 기계, 조리 로봇 등

- ※ 지역 및 학교 여건으로 급식 인원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효율적 조리 작업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급식 설비·기구에 대한 조정 검토
- ※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시설 개선 협의회 또는 TF 구성·운영,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개선 전반에 참여 및 지원
- ※ 재원은 시·도별 교육환경 개선비, 지역현안사업비(특교), 지자체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되, 부족예산은 추경 반영 등을 통해 확보
-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식생활교육관(식당) 공간 확보를 추진하며,
 복도배식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교실배식으로 전환토록 지도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학기 중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철저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학기별 1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등 연간 실시 횟수 조정 가능
 - 1학기 점검은 위생관리지침서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하고,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
 - ※ 1학기 점검결과 위생관리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2학기 점검 대체 가능(단,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 지적사항 발견 → 시정명령(서면) → 차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및 미 이행시 징계(「학교급식법」 제22조)
 -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시 '급식 이물질 혼입 예방 관리 사항' 등도 포함하여 확인하고 취약학교 등에 컨설팅 지원
 - ※ 특히, 2~3식 제공학교, 급식인원수 과대학교 등에 급식 위생 및 이물관리 컨설팅 지원
- 각급 학교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지난해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 되었던 종류의 비조리제품(완제품) 제조·가공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교육청 주관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지적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처분 요청
- 모든 학교에서 방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급식시설·기구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해 급식종료·급식개시 이전에 청소 및 소독 등 실시

다.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매일 조리작업 전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조치^{*} 후 조리작업 참여 조치
 - * (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소독 등 적절한 치료 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함
 -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 ※ (참고)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조리 도구 등을 사용하여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지원 인력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 안내(학생건강정책과-4704, '23.7.19.)

학교급식 분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구분 규칙 개정」('24.1.8.시행) 적용사항('24.1.8.시행) 검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좌동 항목 유효기간(1년) **만료일** 유효기간(6개월) 만료일 검사 전 후 30일 이내 검사 전·후 30일 이내 검사 기간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검사기한 연장 가능 유예 별도 연장기한 없음 기간 지방자치단체 별 수수료 책정 수수료 좌동

<*학교급식 분야 건강진단 적용사항([참고자료 5] 참조)>

- 교육청은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식재료납품업자 등 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HACCP 적용·이행 및 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등 포함)을 실시 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 ※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과정에 반영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분야 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 ※ 교육청 단위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경우 활동 시작전 별도 교육 실시
 -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학생, 교직원(조리종사자 포함), 학부모 등 대상 맞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포함) 실시
 - ※ 납품업체에 종사자 대상 특별 위생교육(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포함) 실시 요청

라.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 각급 학교는 매일 결석·조퇴·지각 학생수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주요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식중독 유시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하고,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시도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의심)환자 집단발생 인지 즉시 교육부에 유선 등 으로 보고하고, 역학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원인 및 오염경로 규명 노력
 -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염자·접촉자에 대한 관리 및 감염자의 구토물·분변 등 환경인자 및 생활시설 관리 철저
 -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중간 검사결과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아 식중독예방 및 재발방지 업무에 활용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조리·제공된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1인분 분량(150g 이상 보존 바람직)을 담아 -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5차 개정판의 '보존식' 참고)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원인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

마. 식기세척제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강화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6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굼 작업 실시
-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고, 원재료 미 표시 등 부적합 제품 납품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수산화나트륨(NaOH)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화학물질관리법」등*에 따른 '유독물질'로 식기세척제로 사용 불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3조 [별표 1]
-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후 CP2 기록지 하단에 기록하고, 확인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 ※ pH 시험지법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알칼리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으로 일반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에 사용됨)으로 검사
 -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기본방침

- ㅇ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심의기능 강화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 ㅇ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현 황

-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에 식재료 표준체계 도입 및 현장 적용('20년~)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련기관^{*}의 가격정보 및 물가동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년~)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정보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사이트 운영(www.sfpi.or.kr)
-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해역-생산-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일본 8개현(후쿠시마 등)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13.9.~)
- 물가 상황을 반영한 급식비 확보로 급식 질 유지, 지역 및 급식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지역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정단가 지원 ('23년 국회 및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주요 업무

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준수 철저

- ㅇ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 업체 권장 **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 정도)된 김치류 제공 권장
- ㅇ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
 - (표시대상) 농축산물(9개), 수산물(20개)

,	
품목	표시대상 (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기공품,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원료인 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수산물	납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 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표시방법) ①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에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식단표,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게시, ②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 포함)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 미표시 및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대상임
 - ※ (농축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참조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원산지 표시] 참조
 - ※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등을 인지하여 표시하고, 검수 시 확인 철저
- ㅇ 축산물 이력제도 준수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국내산(부산물 제외)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수입산소·돼지고기 ※ 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 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 제외
 - (준수사항) ①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② 축산물 구매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 * (표시·게시 방법) [방법 1] 또는 [방법 2] 중 한 가지 방법 적용

[방법1]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유치원·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선택1) 또는 (선택2) 중 한 가지 방법 적용 (선택2)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장소에 게시 당법2]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장소에 게시

- ※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www.mtrace.go.kr /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www.meatwatch.go.kr
-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원패스'를 활용하여 위·변조 의심 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 ※ 축산물검수 원패스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 ※ IT 기술 활용 축산물 검수 시스템(앱) 구축·적용 추진(¹18년~, 시범사업 추진 중)
- 시·도교육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 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식재료 검수요령 교육실시

나.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심의 의무화

-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 ※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영양교 사 및 영양사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3.1.1.시행)에 따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으로 변경되는 바 검수 시 확인

다.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준수

-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
 -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에는 낙찰하한율 적용(1억원 이하~2천만원 초과 88% 이상, 2천만원 이하 90% 이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학교급식 적용 사항 관련) ※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 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 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도록 지도
 - ※ (참고) 식육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 인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및 분할 수의계약 금지

- ㅇ 학교 식재료 등 물품 구매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 식재료 등 물품구매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실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이용

-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분할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할발주 금지, 월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마.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확산

-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와 경쟁입찰이 가능해져 구매비용 절감과 공동 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 교육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단' 구성 → 학교별 계약기간 조정 →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시·도교육청은 공동구매 추진실적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

- · 가공육류 및 조리육류(식육가공품), 신선 또는 냉동한 어류 및 어류부산물(어육가공품_생선묵튀김제품에 한함, 새우패티), 해조류(조미김_맛김에 한함), 각종소스류(요리용 소스_자장소스에 한함, 카레), 장류(간장_혼합간장에 한함, 고추장, 된장), 빵·비스킷 및 쿠키(신선한빵, 냉동빵, 말린빵, 건빵, 상온보관용빵), 파스타 및 면류(면류_자장면, 쫄면, 물냉면, 비빔냉면, 가락국수, 당면, 즉석쌀국수에 한함), 통조림 또는 김치(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명시되어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물품이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공표하고 동 내용을 구매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
 -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 구매 매뉴얼('14.9월)」활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협력체계 구축
 - 학교가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교육청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우수 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14.9월)」활용

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aT, 조달청)이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선별(색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사요청) 또는 경찰에 고발
 - 공정위 조사(수사)결과 불공정행위 확인업체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NeaT 등)에 등록하여 제재조치 강화
 -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
-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및 위생분야 합동점검 협조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및 공정위,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식재료 공급계약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합동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은 식품위생분야 등 점검에 적극 협조

사.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유해·부정물품 납품업체 제재를 위해 해당 입찰자의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식재료 검수 시 유해·하자물품 납품사례 등에 대한 업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불량식품 등 납품업체 제재, 납품된 식재료 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역학조사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제재조치 시행
 -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해지 근거를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 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14.9월)」활용
-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처벌규정 준수 및 공개
 - -「학교급식법」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준수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제재조치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아.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 지역 식재료(로컬푸드),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필요('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생산자단체 직거래 및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추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 o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 등 소비촉진 유도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생산자 및 원산지 표시(실명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조사 방식 개선

-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前) 산지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개선 ('13.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산지출하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 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경우 급식제공을 중단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즉시 반품·폐기 등 조치

차.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 식재료의 생산·유통·운반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었을 경우 식중독 사고와 직결되므로 교육청 차원의 납품업체(대표자) 교육으로 위생수준 및 인식 제고
 - ※ 납품업체에서 식재료 관리를 강화토록 특별교육 실시(식재료 HACCP 적용 철저, 세척·소독· 헹굼과정 등 위생관리 강화, 사전 이물질 혼입 확인 등)
-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의 건전성 및 책임의식 강화
 - 불량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과 더불어 건전성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필요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연령별로 적합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
 관리 역량 강화

□ 현 황

- 2018.4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식단 참고자료" 개발·보급
-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에 대한 인식 및 표기 부적정에 대한 개선 요구(19년 국회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2호, '18.1.1.시행)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21.1.30. 시행)※ 202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보건복지부) 반영 및 유치원생의 영양관리기준 마련
- ㅇ 병설유치원 유아에게 매운급식 제공 관련 진정('22.3., 국가인권위원회)
 - ※ 학교의 급식여건(조리원수, 급식시설·설비·기구 등)을 고려하여,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식단구성 및 조리법(음식크기, 온도, 매운정도 등) 개발 노력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교육부) 협업「식품영양성분 통합 DB」구축 및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정보 연계('23.6.~)

□ 주요 업무

가.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3)
-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 과다 사용 제한
 - 가급적 자연식품과 제철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 ㅇ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 영양량이 표시된 식단표는 가정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간 식단표는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 등에 게시

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시행 철저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 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개정, '13.11.23)
 - 위반 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위탁급식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종류> ①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햄, ⑲잣·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식품등의 표시기준」참조)

- 공지방법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주간 식단표를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교실)에 게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정보 활용 시 학교에서는 제공식단의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 후 안내
-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특정 식품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건강 교육 등 관리 실시

라.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 ㅇ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수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
- ㅇ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염도계'를 구입하여 활용
 -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 \sim 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참고

마. 학교 우유급식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운영관리 및 우유급식 참여율 제고
 - ※ 유치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별개임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현 황

-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부 훈령(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정('14.2월)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및 초등학교 교육자료, 「학교 영양상담 매뉴얼」,「식생활 및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개발·안내("22.4.~)
-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학생에게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도록「학교급식법」개정('22.6.29.시행)
-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안내서」개발·안내('23.10.) 및 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안내 예정('24.상)
- 2024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10351('23.11.27.)
- 2024년 교육부 초·중등 분야 주요 정책 안내(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강화)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0928('23.12.15.)

□ 주요 업무

가.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강화

-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계획' 반영 및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월 2회 이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지도

-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및 초등학교 교육자료 개발·안내('22.4.)
- ※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강화(일부학교에서 외부 기관 위탁교육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및 혼란 등 민원제기)
-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참고
-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잔반 줄이기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관련 정보제공
- 급식현장을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변경, 영상장비(인터넷 활용) 등 교육환경 마련 ※ (현행) '급식소', '식당' → (변경) '식생활교육관', '식생활관' 등
-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 또한, 청소년 아침결식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학교장 및 교감·교사, 행정직원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반영
- '식생활교육실' 운영 및 식생활 교육·체험공간 확충 권장
 -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을 구성 하여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유휴 공간을 식생활 교육 체험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변화하여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 등 방안 검토 필요('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기초 조리능력 배양
- ㅇ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나.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ㅇ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등 식사조절 필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상담실시
 -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활용
 - ※「학교 영양상담 매뉴얼」및「식생활 및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개발·안내('22.6.)
- 급식관리실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명 이상(유치원의 경우 2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교육청 대책)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실태 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 수립·추진(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 확인)
- (학교 대책)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하여 배식 조절대 비치 및 활용
 - ※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절감 도모

라. 영양교사 배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방안 강구(사립학교, 유치원 포함)
 - 유치원의 경우 행정지도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방안 강구
 - ※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및 공동관리 대상교에 영양교사 배치 방안 마련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및 공동관리 개선. 고용안정성 향상 방안 마련('21년.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영양교사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연구회 등 지원
- ㅇ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대상 영양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체제 구축으로 급식시스템 개선
- ㅇ 학교급식 현장의 급식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 현황

- 학교급식은 위생, 영양, 식품, 시설·설비, 예산, 인사관리 등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분야의 지원 필요
 - 학교예산의 60% 이상이 급식예산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등 행정업무 과다
- 학교급식 관련 현안(위생·안전사고, 불량 식재료 납품, 긴급 상황 등)에 신속 대응 및 영양·식생활교육 등 역량강화 필요

□ 주요 업무

가. 과학적인 급식관리 기술지원 체제구축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업무 전문 담당인력 보강
 - 급식위생·안전점검 등 식중독 예방관리, 영양관리 및 교육, 식재료 구매· 계약, 급식비 지원 등 체계적인 업무 지원
- 학교급식 위생 및 경영관리지원기구 운영방안 강구
 - 학교급식 현장에 필요한 급식관리기술 개발·보급 및 위생·안전점검, 급식 운영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지원 강화
-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정보센터 설치·운영
 -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의문사항 등 질의응답

나.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행정인력 보강

- ㅇ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
 - 교육(지원)청의 위생·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보강방안 강구

- 「학교급식법」개정('21.1.30. 시행)으로 유치원이 급식대상에 포함(국·공립 및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됨에 따라 업무 증가를 감안하여 전문 인력 등 추가 확보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할 영양교육 전문직을 시·도 교육청 등에 배치 협조('21년,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 및 확대 방안 검토('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일정규모 이하 유치원(원아 수 50명~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적정인원 배치 추진

다. 학교급식 인력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추진
 - 시간외 근무 시 수당지급,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시 특별휴가 부여 ※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지급하는 사례 없도록 개선('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하여 업무간소화 등 행정지원 방안강구 및 적정인원 배치와 교대근무 등 근로
- 기준법에 맞도록 처우개선
 -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급식인력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
- 학교회계직원 배치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할 경우는 기존직원의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고려
- ㅇ 급식인력 근무여건 개선
 - 지역 실정, 시도별 채용규정(조례, 규칙 등), 급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시도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기준 시행 및 인력 확충 노력
 -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상이 및 학교급식 식수인원 대비 종사자의 적정인력 확충, 퇴직현황 파악, 대체인력 확보 등 관리 필요('20년, '21년, '22년,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특히,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및 인건비 산정 기초에 실제 급식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등을 포함하도록 조치
 -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에도 조리인력 적정배치 및 식기세척기·다기능 오븐기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지원
 -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경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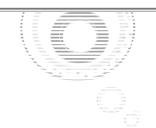
-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질병 및 감염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교육청 단위 통합운영 권장)
 - ※ 병가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가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대체할 인원이 없어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16. 국정감사 지적사항)
 - * 대체인력 운영사례: 평상시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풀 구성·운영 이외에도 교육 (지원)청에 전담반 구성 및 거점학교 배치·지원, 유관기관(지자체 센터 등) 연계 등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대상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라. 학교급식 운영 지원

- 학교급식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조직·운영 및 행·재정 지원 확대
- 「NEIS 학교급식 식품코드 운영협의회」운영 협조('23.12.~)
 - 신규 식품코드 추가 검토, 식품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검토와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협의회 운영 적극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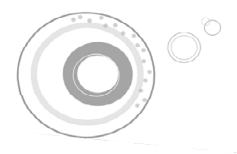
마. 자치단체의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 밖 급식지원 협조

-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 밖 결식우려 학생 급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지자체별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 행정협조 등 지원방안 모색
- ㅇ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참여 및 학교의 급식시설 이용 요청 시 적극 협조



Ⅳ. 행정사항

-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 2. 보고 목록
- 3. 보고 서식
 - ※ 참고자료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 2024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학생건강증진 전반에 걸쳐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 및 심사방법 : 우수사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공모기한(9월경) 내 제출 받아 서류심사 후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
 -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학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 2024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및 교육자료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식품안전과 질 높은 급식 제공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므로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개발・발굴하여 단위학교에 보급・적용함으 로써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공모분야 및 방법)
 - 응모내용 : 학교급식 운영·위생·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 응모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모든 유·초·중·고·특수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직원 등
 - 응모방법 : 해당교육청에서 사전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 서류심사 및 필요시 발표심사 등 실시
 - ※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여 우수사례 공모에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2024년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소통단 운영

○ (목적) 학교급식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 수렴, 개선과제 발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정책 발전 기반 마련

○ (운영 방법)

- 구성 :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고 적극 참여가 가능한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참여 * 학부모/학생/정책·운영분과(관리자, 교직원, 학계 전문가 등)
- 일정 : 발대식(5월~) →정책소통단활동 및 협의회(5월~11월) → 결과나눔회(12월)
- 내용 : 학교급식 전반(운영,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과제 발굴,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 추천 및 소통단 운영 지원, 지역 우수학교 현장 방문 계획 수립 등 협조

□ 2024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유공자 표창

- (목적) 2024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및 학생 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 유공자 등을 발굴·표창하여 관계자 사기진작 및 학생건강 정책의 발전에 기여
- (대상) 학생 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추진성과가 탁월한 우수기관(학교, 단체) 및 유공자
 - 각급학교, 교육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유공자(교직원, 일반직, 민간인, 지역인사 등도 포함)
 - 표창수량 : 미정(별도 통보 예정)
- (일정) '24. 10~11월 대상자 추천, '24. 12월 표창수여

□ 학생 건강증진 분야 국외연수 추진(상황 고려)

- (목적) 학교건강증진 관련(건강·환경·급식관리 등) 해외선진지 견학(연수)을 통해 제반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
- (기본방침) 연수목적을 고려하여 학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연수대상자 선정 및 소요예산 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충실한 연수를 위하여 사전과제 부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계획) 시·도교육청의 참여의사 확인 후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예정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회 개최(예정)



2. 보고 목록

[건강관리 분야]

순번	보고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5. 2. 7.	서식 제1호	서식(엑셀) 별첨
2	학생 건강증진교육 추진 현황	2025. 2. 7.	서식 제2호	서식(엑셀) 별첨
3	보건교육 추진현황	2025. 2. 7.	서식 제3호	서식(엑셀) 별첨
4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사안 발생시	서식 제4호	
5	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4. 5. 15	서식 제5호	
6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2025. 3. 31	서식 제6호	

[환경관리 분야]

순번	보고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2024. 7. 16	서식 제1호	
		2024. 12. 17	, , ,,,,,,,,,,,,,,,,,,,,,,,,,,,,,,,,,,,	
2	학교먹는물 관리실적	매분기말 기준	서식 제2호	
	수보기는한 선덕한국	익월 5일	M 7 MZZ	
3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추진현황	2024. 7. 16	서식 제3호	
	주파 1 전 비에컨 20 20 비 1 전 한행	2024. 12. 17	177 MOS	
$\begin{vmatrix} 1 & 4 \end{vmatrix}$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2024 6. 30	서식 제4호	
4	불법 금지시설 현황	2024 0. 30	^ ~ ~ 4 <u>~</u> 	
_	2023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2024 2 20	서식 제5호	고발요령 및 절차
5	소송현황	2024. 2. 28	시역 세5오	<참고자료1참조>

[급식관리 분야]

순번	보고사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① 인지즉시:유선보고② 역학조사실시일:서면보고	서식 제1호	대책협의 결과 식중독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안은 서면보고 생략가능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	서식 제2호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기능



3. 보고 서식

【건강관리 분야】

[서식 제1호]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교육청

1. 초중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2 - 7	د ، بح	전체	건강검진	전체 '	학생수	검진완료	도 학생수	검진소요
학교급	학년	학교수	미실시 학교수	남	여	남	여	비용 합계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24년 시도별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구강검진 미실시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 학생수	검진소요
7.5	학교수	학교수	남	여	남	여	비용 합계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24년 시도별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 (구강검진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šli i	2	소변검시	\	,	시력검시	}	=	구강검서	4	콭	렬핵검시	+
4 亚 日	학년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24년 시도별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

[서식 제2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교육청

1. 교육실시 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	수			교육	-실시 학	교수	
モ	초	중	고	특수	각종	초	중	고	특수	각종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마약투	무를 포함한 약	물오남용 에병	}교육 실시 /	시간별 학교수	구(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시시간별			
학교급	학교수		학교수(교)				
点亚月	(교)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서식 제3호]

보건교육 실시현황

학교급	학교수	보건과목	(해당	학년 보7	보건교· 보건교·	육 현황 시수 /해'	당학년 학	·급수)	최소 1개학년 17차시
별	7121	선택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상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 보건교육 현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서식 제4호]

< '19. 00. 00(), 00교육청 >

ద

[조치현황/언론취재

삡

말 상 요

감염병명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후의연행

님 담당자(성명/연락처) 교육지원청 뎌 교직원수 井 희 발생 사 소재지 학교명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聖佛 감엄명 서식은 京 多州 五五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БK いに 다 면 면

1 1 1	3		발생인원			<u> </u>	
면 약수수 일시의 의 기업		환자수	설	학년/반(인원수)*	나이스 모고일**	모선소 신교일*	다음 역약소사일
118.1.10	결핵	1	학생	2-1(1)	19.1.3	19.1.3	19.1.25
18.1.12	백일해	30	1871 <u>0</u>	1–1(10)	19.1.3 / 19.1.11	19.1.11	<u>।</u> ।स
18.2.22	결핵	1	房世	2-3 담임(1)	해당없음	19.2.21	8/0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보고(신고)일을 기재 <u>동</u> 보고(신고)일과 <u>원</u>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H0 의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은 ЫK क्षी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역학조사

	1		조사자 현황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작업	대/타	조사인원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최초/중간/최종)					
		학생	1-7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19.1.10	<u>짜</u> ~	₩ē	1-8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形皿	5-1 담명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19.1.12	7 24	1 0	₹ 0	1-1(15) 3-1(2) 4-1(1)	19.1.3 / 19.1.11	백일해 현자가 발생한 학급 백일해 현자의 형제 자매
19.2.22	출	₩ <u></u>	2-3	24	<i>결핵 : 0명</i>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서식 제5호]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교육청

□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4.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제1형 당뇨 학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기	시교 재학 현 황 *
Tゼ	학교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목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EL 701	#70 t 9 0 1	716 901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4.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제6호]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기관명: 교육청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 ¹⁾	교육이수 인원 ²⁾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학교 내	학교	내부 강사활용	- 학교	외부7	기관 강사 초빙	학교
구분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열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서식 제1호]

【환경관리 분야】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반기 / 서면) 기관명 :

교육청

1. 정기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Ŧ	·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	체 학교수					
	체	육관 · 강당					
	기술	· 수사(3년 이하)					
점	검	실내환경					
		공 기 질					
약	교수	일반환경					

※ 작성요령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교육부고시 제2022-20호) 제2호의 '학 교시설 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 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 체육 관·강당, 기숙사(3년 이하)는 해당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모든 학교수를 기재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Ē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점	검 -	학교자체					
	.	교 육 청					
1	관	외부기관					
(일변	<u>''</u> ') [계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교사 및 급식시설)

	Ž	스등학.	II	중	- 학	II	Ĺ	고등학	亚	7]타학	亚		계	
구 분	적	합	> 기	적	합	초과	적	합	> 기	적	합	초과	적	합	초과
	1차	최종	초과	1차		소박	1차	최종	초과	1차	최종	소박	1차	최종	소박
PM10 (μg/m³)															
PM2.5 (μg/m³)															
CO ₂ (ppm)															
HCHO (μg/m³)															
총부유세균(CFU/m³)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 ₂ (ppm)															
Rn (Bq/m³)															
TVOC (µg/m³)															
석 면 (개/cc)															
오 존 (ppm)															
진드기 (마리/m²)															

라. 공기질 측정결과(체육관·강당)

	Ž	등학	īl.	ZF ZF	- 학	亚	Ĭ.	고등학	교	7	기타학	교		계	
구 분	적	합	초과	적	합	초과	적	합	· 초과	적	합	초과	적	합	초과
	1차	최종	소ヸ	1차	최종	소파	1차	최종	조박	1차	최종	조박	1차	최종	조坪
PM10 (μg/m³)															

마. 공기질 측정결과(기숙사)

	2	초등힉	- II	÷	중 학	교]	고등학	· 교	7	기타학	- I		계	
구 분	적	합	초과		합	초과	적		초과	적		초과	적		초과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HCHO (µg/m³)															
TVOC (µg/m³)															
벤 젠 (μg/m³)															
톨루엔 (μg/m³)															
에틸벤젠 (μg/m³)															
자일렌 (μg/m³)															
스티렌 (μg/m³)															·
Rn (Bq/m³)															

2. 특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선독3인 의대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ठ गाँच	점검 학교수					
기 타	대상 학교수					
/I F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2	초등힉	-교		중 학	교		고등힉	교	7	기타힉	교		계	
구 분	적	합	초과	적	합	초과	적	합	· 초과	적	합	초과	적	합	초과
	1차	최종	소4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HCHO (µg/m³)															
TVOC (µg/m³)															
벤 젠 (μg/m³)															
톨루엔 (μg/m³)															
에틸벤젠 (μg/m³)															
자일렌 (μg/m³)															
스티렌 (μg/m³)															

※ 작성요령 : 폼알데하이드(HCHO)는 점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측정결과를 작성

3. 신축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처	학교수					
	관·강당					
	기숙사					
점 검	3월 개교					
	9월 개교					
학교수	계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2	초등힉	-교	ć	중 학	교		고등학	-교	7	기타학	-교		계	
구 분	적	합	초과	적		초과	적		초과	적		초과	적	합	초과
	1차	최종	24	1차	최종	24									
HCHO (µg/m³)															
TVOC (µg/m³)															
벤 젠 (μg/m³)															
톨루엔 (μg/m³)															
에틸벤젠 (μg/m³)															
자일렌 (μg/m³)															
스티렌 (μg/m³)															
Rn (Bq/m³)															

[※] 특별점검, 신축학교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 행규칙」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서식 제2호]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기관명: 교육청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상수도(A)					
7] 2년 1년	지하수(B)					
시설별 학교수	상수도+지하수(C)					
7221	외부공급(D)					
	계(E=A+B+C+D)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 지하수는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만 기재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대상학교수(A)					
상수도	설치학교수					
이용교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B)					
지하수	설치학교수					
이용교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상수도	대상학교수(C)					
지하수	설치학교수					
공 동	설치저수조수					
이용교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A+B+C)					
جاً	설치학교수					
계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에 기재된 학교수와 동일하게 작성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정수기 설치학교수					
	검사 대상 정수기수(A)					
	검사 정수기수 (B=C+D+E)					
()분기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정수기 외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대상 학교수(A)					
분기	검사 학교수 (B=C+D+E)					
or 정기	1차 적합판정수(C)					
7871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 [참고] 정수기 특별점검결과(분기)

	구분	초	중	고	각종특수	합계
	특별점검 학교(A)					
	특별점검 정수기수(B=C+D+E)					
()	1차 적합판정수(C)					
분기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필요시 후속조치 등 작성(수질검사시기 조정, 청소 철저, 설치장소 변경 등)

[서식 제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반기 / 서면)

기관명: 교육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 실시

		시시미사	정권시시	ᅰ	여		활동 내용	용(건수)	
	구 분	실시대상 학 교 수	점검실시 횟수	참 인	역 원	유해업소 신고(통보)	불량광고 벽보제거	업소계도 전단배포	계
	<u>जिन्ने विष्ठ</u> े जिन्ने								
	관리자								
반기	<u> </u>								
	설정자								
	계								
	누 계								

※ 작성요령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실시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모든 학교

- 실시횟수 : 교육감이 정한 횟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중복 기재)

- 활동내용 :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청에 통

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위반사례 통보처							
	구 분	통보건수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시·군·구청				
	서면통보									
반기	유선통보									
	계									
	누 계									

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실적

구 분	심의건수	해?	제	금	·ス	전체교육환경보호위원
1 1	경의신구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현장방문건수
반기						
누 계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구 분	행정공무원	경 찰	교육청/교직원	학부모/기타	계
반기					
누 계					

4-2. 적발내용

구 분	퇴폐·변태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묵인	준수사항 위반등	계
반기					
누 계					

4-3. 위반업종별 현황

구 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 반 음식점	게임관련 시 설 등	노 래 연습장	신변종 업소	비디오물 관련시설	기타업소	계
반기								
누 계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구 분	고 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시정	기타	계
반기						
누 계						

- ※ 교육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교육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 ※ 4-2, 4-3. 4-4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유예기간 초과시설)

5-1. 시설 현황

	1. 기년 건청	유치	1원	초등	학교	중호	计记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학	(교)		계	
	구 분	절대		절대		절대	상대					절대		절대	상대	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도축장															
	도축장															
	화장장															
3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4	폐기물 수집장소															
	유흥주점															
5	단란주점															
	소계															
	관광숙박업															
6	숙박업															
	소계															
7	전자유기장(컴퓨터게임장)															
8	소계('95년말까지)															
9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10	도네 한 급경 담배자판기															
	소계('98년말까지)															
11	전화방															
12	성기구취급업소															
1-	소계(즉시)															
13	비디오물감상실															
	소계('02년말까지)															
	게임제공업															
14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04년말까지)															
15	경륜·경정장															
	소계('09년말까지)															
16	미니게임기															
	소계('08.8.4까지)															
17	신변종 업소															
	소계('11.7.20까지)															
18																
2	소계('20.12.31.까지)															
	합 계															

[※] 현재 미정비 잔여시설에 대하여 작성(6-1에 따른 무단 설치시설은 제외)

5-2.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정화요?	청/고발		이전ㆍ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구 분	정화요청 건 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보호구역조정	계		
반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બી મો	그 비스	고발자	ન મી.સો	고팅	발내용
연번	고발일자	(기관명)	고발처	업소명	위반내용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정비기한별	업 종	업소명	업소소재지	관리학교명	정비일자	조치내용
1995.12.31						
1998.12.31						
즉시정비 2002.12.31						
2004.12.31						
2008.08.04						
2009.12.31						
2011.07.20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 ☞ 모든 지정된 보고서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ㅇ 서식안의 내용은 흔글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요망
 - 특히, 통계수치는 정확히 작성하여 집계 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 지정된 보고기일 내에 우리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기일 엄수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무단 설치시설) 6-1. 시설 현황

	7 H	유치	시원	초등	학교	중호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힉	(교)		계	
	구 분	절대		절대	상대	절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ㆍ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숙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도축장 화장장															
1	왕장생 봉안시설															
4																
	자연장지 소계							•								
5	소계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고압가스, 도시가스,															
10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15	인터넷컴퓨터,															
15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7	무도학원															
18	사행행위장 등															
19	노래연습장															
20	비디오감상실업															
	유흥주점															
21	단란주점															
	소계															
	관광숙박업															
22	숙박업															
	소계															
23																
	합 계															

^{※ 5-1}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시설은 제외

6-2. 무단 설치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정화요?	청/고발		이전 · 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구 분	정화요청 건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보호구역조정	계				
반 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서식 제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서면, 6.30기준) 기관명 : 교육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л н	유키	티원	초등	학교	중호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힉	(교)		계	
	구 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도축장															
	화장장															
4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4-	인터넷컴퓨터,															
15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7	무도학원															
18	사행행위장 등															
19	노래연습장															
20																
	유흥주점															
21	단란주점															
	소계															
	관광숙박업															
22	숙박업															
	소계															
23																
	합 계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 н	유키	치원	초등	학교	중호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힉	(교)		계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도축장 화장장 4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교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단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구 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3 가축사체처리장 도축장 화장장 4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교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미니게임기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3 가축사체처리장 도축장 화장장 4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교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미니게임기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도축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기축시장 제한상영관 전화방, 화상방 청기구취급업소 보변종업소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기 폐기물수집장소 환포, 화학류 감연병 격리소 등 감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가죽문뇨, 문뇨)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3	가죽사체처리장															
4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보험유통게임 소계 16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교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계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소계 16 미니게임기 16	4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16 미니게임기		자연장지															
6 제한상영판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0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_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0	_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이니게임기		전화방, 화상방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악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이미니게임기	_																
10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9																
역화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보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액와식류가스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보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폐기물수집장소															
14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보합유통게임 보험유통게임 16 미니게임기		종포, 화학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_																
15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4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ļ
목압유동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5																
16 미니게임기		목압유동게임															ļ
17 무도하임																	
	17																
18 사행행위장 등	_																
19 노래연습장	_																
20 비디오감상실업	20	비디오감상실업															
유흥주점		유흥주점															
21 단란주점 : : : : : : : : : : : : : : : : : : :	21																
소계		소계															
관광숙박업																	
22 숙박업	22	숙박업															
소계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합계		합 계															

※ 작성요령

- [서식 제3호]의 5-1, 6-1에 따른 이전·폐쇄업소 및 무단 설치시설 현황(2분기)을 합한 시설수와 동일하게 작성

[서식 제5호]

2023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1. 소송(심판) 현황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건수					
인용건수					

[※]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최초심이 2017년 이전이라도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용건수는 교육청 기준으로 기재

2. 금지행위 및 시설별 소송(심판) 건수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구 분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가스관련 제조소·저장소										
숙박시설										
기타										
계										

【서식 제1호】 【급식관리 분야】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24.3.19. ○○○○교육청)

<요약>

'24.3.19(화), ○○도 ○○시 △△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명 발생

1. 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학교	여야(교)시		
학교병	287元	급식성대	학생수	교직원수	영양(교)사	
교육부고등학교	공립	직영/상수도	500	45	주아무개	

2. 발생현황

- 인지일시 : 3.19.(화) 10:30경
 - (인지상황) 3-1반 담임 000이 담당학급 학생 중 설사증상 학생이 2명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에 보고
- **보건소 신고일시** : 3.19.(화) 11:00경 △△보건소(신고자 : 교감 000)
 - 신고시점 기준 (의심)환자 현황 : 총 11명 (학생 10명, 교직원 1명)
- 학교 조치내용
 - 학교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추가 환자 파악, 교내 소독 등) ※ 학교자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한 경우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요약

3. 역학조사 등 조치사항

-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 참석자** : 00교육지원청 식품위생주사보 김길동
-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가검물 채취) 환자가검물 건, 환경가검물 건
 - (추정 감염경로 및 원인식품)
 - (급식 여부) 급식 중단 없음 /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 급식 중단

- (기타 중요 결정사항 등)

4. 환자 세부현황

- 이 사례 정의:
- 학생 환자 현황('23.3.19. 17시 기준)

구분		합계					
T世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답 개
학생수							
환자수							

- 일일상황보고(작성예시)

구분	환자=	수(명)		치료중 취	환자수(명)		비고
TE	누적	신규	입원	입원	투약/자가	합계	0177
03월 13일	10	10	1	4	3	8	발생인지일
03월 14일	12	2	0	3	2	5	
03월 15일	13	1	0	1	1	2	
03월 16일	13	0	0	0	1	1	추가환자 없음

※ 매일 17시 기준으로 환자 및 치료 현황을 엑셀로 작성(별도서식 제공)하여 교육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2일 연속 추가환자 발생이 없으면 보고 종료

5. 참고사항

- 언론취재 :
- 기타 :

【서식 제2호】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기관명: ○○○교육청

1. 발생개요

- ㅇ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ㅇ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 보고시기 :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종결보고)
 -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고발요령 및 절차

	담	당 공	무원은	- 교육	환경	보호어] 관한	법률	위반	업소를	인지	하면,
	1	고발의	비뢰서									
	2	고발경	}									
	3	담당	공무원	년 진술	러							
			`			정공문/ -가능)	서 등)을	을 구별	비해서	관할 기	경찰서	민원실어
	관학	할 경침	할 서는	고발	의뢰서	네를 토I	대로 사	실 확	인 후	검찰청	에 송치	3
[예	시1]				卫		발	7	<u>}</u> -			

- 1. 피고발인 인적사항
- 2. 영업장소
- 3. 고발사유 및 내용
- 4. 관계법규
- 5. 첨부서류

2024. . .

○○교육청교육장

○○경찰서장 귀하

진 술 서

- 소 속:
- 직 명:
- 성 명 :
- 업 소 명 :
- 업 종:
- 업 주 명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2024. . .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2】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	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
기관:	으로서의	책무를	성실	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	다.(계약서	작성	성 생략)		

□ 검진	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4년도 〇〇학교 학	2024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u> </u>	4학년 비만학생		¦생
1236008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4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	일 202	4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검진대상인원	9*검진비용	응)의 10%	, >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 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 (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 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을 한다.
-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O O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3】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정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시기	청소 • 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관리카드는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냉・온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에어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 (증기소독, 약품소독)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 1. 냉・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 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2. 냉・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관리카드는 냉・온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4】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 교육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안 사먹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 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시행방법

-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참고자료 5】

건강진단 개정 관련 Q&A(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Q1. 건강진단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2024.1.8.부터 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 적용
 - ※ 개정 전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6개월에 1회 기준 준수(유효기간 및 검사기간제도 미적용)

Q2.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 직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기산(검진일 기준 아님)

※ (예) '24.2.1, 건강진단 시 → 유효기간 만료일은 '24.8.1. →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25.2.1.

Q3. 검사기간은?

-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0일 이내 실시
 - ※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 주기로 반복됨

<적용 예시>

구분	검사	다음 검사	다음 검사	다음 검사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동안)	'24.2.1. (건강진단 제도 변경 후 검사)	′24.7.2.~′24.8.31.	′25.1.2.~′25.3.3.	′25.7.2.~′25.8.31.
유효기간	'24.8.1.까지	'25.2.1.까지	'25.8.1.까지	'26.2.1.까지

[※]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이전 또는 이후에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다시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이 새로 산정되므로 유의(검사기관 변경시에도 적용)

Q4.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진단 결과서에 표시되므로, 결과서 확인("24.1.8.부터 검사자는 아래 서식으로 변경 예정)

<(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학교급식)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2024-01-08	2024-01-13	정상	2024-07-08
파라티푸스	2024-01-08	2024-01-13	정상	2024-07-08
폐결핵	2024-01-08	2024-01-13	정상	2024-07-08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4]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단,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6】

2024년도 주요 변경내용

□ 건강 분야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	목차	<신설>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법령개정 사항 반영
2.		□ 주요 업무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추가>	☐ 주요 업무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철저	무자격자에 의한 검진 사례
		<추가>	나.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철저 ○ (학교·교육청) 표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 하는 검진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표본조사 학교 및 매뉴얼 변경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 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속~) <내용 수정> 	○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교육청) 학생건강검진 위탁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예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의 업무 협력 협조 요청	개선 추진단 발족 후속
	그리 기사내 세네.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 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삭제>	
3.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현황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학생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추가 개발 등 	 ○ 현황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학교 감염병 예방 2차종합대책('24~'28)」수립·추진('23.12월~) 	'23년말 후속조치 (종합대책 수립 및 매뉴얼 개정 완료) 추진상황 반영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제3차 개 정판 제작·배포('23.12월) ※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추가 개발	
	 □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 천 및 교육·홍보 강화 < 추가 > 	□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 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 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 내용 반영
	라. <u>학생</u>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별 세부 대책 추진 철저 ○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코로나19 <u>대응 단계 변동 상황 등을 고려 수립 예정</u> - <u>학생</u>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이후(이하생략)	지도별 세부 대책 추진 철저 ○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경험 등을 고려 수립('23.12월)	'23.12월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완료 반영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지원 - 「<u>학생</u>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등(생략)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대응매뉴얼'
4. 마약류 및 흡연· 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추가>	○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23.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확대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 ('23.12.18.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 주요 업무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마약· 흡연, 음주 등 약물 오· 남용 예방교육 실시 강화 <내용 수정>	□ 주요 업무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강화 ○ (학교·교육청) 모든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고려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대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 ('23.10.16)>	고시개정 사항안내
	<추가>	나.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추가>	다. 담당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 강사 지원 ○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 실적 관리 ○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지원 예정	
	<추가>	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추가>	마.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이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 이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 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추가>	전문위원회' 운영 바. 학교 금연구역 지정·운영 현재 유치원 주변 10미터 까지의 금연구역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확대 적용 예정 ('24.8.17)	법령 개정사항 반영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u>소아당뇨</u> 등 질병이나 장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 연령 대에서, 2형 당뇨병은 주로 40대 이후 중년기 연령대에서 호발 □ 현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당뇨 혼동 방지를 위한 보완 설명 추가 교직원 교육에 대하 범저
	구성원의 안전 확보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장은「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내용 및 타 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 요건에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 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 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 치시항철저 검토후추진 필요	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 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반영
	나.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 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생략) ※ (교육청)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	나. <u>제1형 당뇨</u>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 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이당뇨는 1형 당뇨에 해당하므로
	 현황(인원) 제출받아 <u>소아당뇨</u>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생략)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u>당뇨</u>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생략)	
6.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 주요업무 <신규 과제 추가>	□ 주요업무 다. '마음EASY 검사'를 통한 마음건강 수시 및 조기 발견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신규 과제 추가>	7.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법령개정 사항 반영
[서식 제1호]	<서식 변경>	마약류 예방교육 실적 보고서식 분리 및 타 교육실적 보고서식 통합	
[서식 제3호] [서식 제5호]	<추가> <자구 수정>	○ 보건교육 실시현황 보고서식 추가 ○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u> </u>	○ 세1명 정표 중 박생 새딱 못 시전연왕 	

□ 교육환경 분야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는 반드시 시·도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통보 ※ <신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가능 강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및 승인 시 법정 기한을 초과 	법령준수 사항 강조
		<신설>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국토부 협조요청사항 이행 안내('23.9.27.)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관련 교육감에게 제출된교육감에게 제출된교육환경평가서는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회신-권고사항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정 전 교육감에게추가 제출예정으로 법정절차에 따라 검토 및 심의	국토교통부 요청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심의 및 사후관리 이력 공개 및 관리 철저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 경평가서는 교육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법령 이행사항 안내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시스템과 교육환경평가관리시스템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환경 으로 이전·전환 추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는	법령 이행사항 안내
	<신설>	마.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이러닝 입문 과정인'교육환경보호제도 이해'(12차시) 연수과정 운영(한 국교육환경보호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21년~) ○ 교육환경보호업무 신규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단기 직무과정 (1일 8시간, '24.3월 및 8월, 신규자) 및 직무연수 심화과정 (18시간, 6월) 운영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구 문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주요 업무 <자구 수정 및 추가>	□ 주요 업무 가.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의 안전성·신뢰도 제고 ※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 하반기)에 등재하기 전에 <u>학교</u> 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23) ※ 환노위
	<자구 수정 및 추가>	 나. 교육(지원)청의 학교석면관리실태 지도·점검 강화 ○ 학교 석면위해성 평가 결과에대한 확인·점검 체계 마련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위해성 평가 검토(점검)단등을 구성하여 학교의 석면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표본 확인·검증 시행 - 학교내 관리가 미흡한 학교를대상으로 업무지도 또는컨설팅 지원 ※ 시·도교육청에서 석면위해성 평가관리 감독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촉귀(20년감사원)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협의(설명)회 또는전문교육실시하여석면관리에대한 전문성제고 	

□ 급식 분야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목차	 6.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 지원 강화 	<삭제> 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 지원 강화	기존 6번 삭제 (무상급식 상황 반영)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다. 학교 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 급식소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 급식 <u>관련 설문조사</u> '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의견 반영)
		- 급식의 질 향상과 보호자 부담경감을 위해 매 학기말 기준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매 학년도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공개	(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있는 경우에	법령상의 내용 반영하여 자구 수정
2.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	□ 현황 <추가>	□현황○ 방학 중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여름은 곰팡이, 겨울은 돌파 등) 지적('23년 국정감사)	フース・ノースト
		□ 주요 업무 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철저 <추가>	□ 주요 업무 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철저 ○ 모든 학교에서 방학 등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종료·급식개시 이전에 청소 및 소독 등 실시	사석사(% 반영(*23)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다.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폐결핵은 연 1회) 건강진단 실시하고~ <추가>	마다 1회 이상(폐결핵은 연 1회) 건강진단 실시하고~ ※ (참고)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조리 도구 등을 사용하여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지원 인력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유권해석 안내(학생건강 정책과-4704, '23.7.19.) <* 학교급식 분야 건강진단 적용 사항(참고자료 5 참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8.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법령개정 사항 반영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현황 <추가>	학교급식 분야 적용사항 안내 현황 물가 상황을 반영한 급식비 확보로 급식 질 유지, 지역 및 급식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정단가 지원 (23년 국회 및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정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23)
	원산지 표시제 등 준수 철저 ○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 - (표시대상) 농축산물(9개), 수산물(15개)	수산물(20)	법령개정 사항 반영 (원산지 표시법 개정 관련)
5.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 현황 <추가>	□ 현황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안내서」개발·안내('23.10.) 및 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안내 예정('24.상)	

	구 분	2023년도 주요내용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 주요 업무 가. <u>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u> 교육 강화	□ 주요 업무 가. <u>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u> 교육 강화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으로 자구수정
		 '식생활교육실' 운영 등 특별 활동 강화 <추가> 	 '식생활교육살' 운영 및 식생활 교육·체험공간 확충 노력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유휴 공간을 식생활 교육체험공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변화하여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제2차 학생건강 증진기본 계획」 반영
			※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 등 방안 검토 필요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6.	학교급식 지도· 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나.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행정 인력 보강	□ 주요 업무 나.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행정인력 보강 ○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및 전문 인력 확보 ★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 영양교육전문직원 배치 및 확대 방안 검토('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23)
		근무여건 개선	다. 학교급식 인력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상이 및 학교급식 식수인원 대비 종사자의 적정인력 확충, 퇴직 현황 파악, 대체인력 확보 등 관리 필요('20년, '21년, '22년,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23)
		<추가>	[참고자료5] 건강진단 개정 관련 Q&A(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	법령개정 사항 반영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관련)